

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3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9. 2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(안 제2조)

○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
의료시설 중 병원

나. 미술장식의 설치·절차 등(안 제3조)

○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, 심의 후 통보

○정부·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 생략

다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(안 제4조)

○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/1000이상

○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: 5/1000 이상

라.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
○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

○위촉위원은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,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

○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

사. 위원회의 기능(안 제8조)

- 미술장식의 가격, 예술성, 환경과의 조화,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

아. 위원회 회의(안 제10조)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·제9조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·제24조·제25조,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(2) 입법예고(2007. 6. 14. ~ 7. 3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) 군수가 「문화예술진흥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.

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)
2. 업무시설
3. 숙박시설
4. 판매시설
5. 위락시설
6. 의료시설 중 병원

제3조(미술장식의 설치·절차 등) ①영 제24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 후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④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미술장

식으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⑥건축주는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,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,000분의 1이상
2. 영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: 1,000분의 5이상

제5조(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)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
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미술장식의 설치 확인)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) 영 제24조의3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, 평가를 위하여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문화관광과장, 도시건축과장과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
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

은 임기로 한다.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미술장식의 가격
2. 미술장식의 예술성
3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4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5.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

②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

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

제11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2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

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

건축 개 요	위 치					
	건축주	성명 :	주소 :			
	대지면적		건축면적		연 면 적	
	층 수		최고높이		구 조	
	용 도		외장재료		건축종별	
	허가일자		사용검사 예 정 일		총공사비	
건축 설계자	주 소					
	사무소명		성 명		전화번호	
미 술 품 개 요	작 가 명	(인)	작 품 명		작품가액	
	전화번호		재료(색상)		규 격	
	작 가 명	(인)	작 품 명		작품가액	
	전화번호		재료(색상)		규 격	
	작 가 명	(인)	작 품 명		작품가액	
	전화번호		재료(색상)		규 격	
	총설치수	조각 점. 회화 점. 기타 점. 계 점				
	총 가 액			설치완료예정일		
<p>「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: 인</p> <p>거창군수 귀하</p>						
※ 첨부서류 : 뒷면 참조						

※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

[뒷면]

□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
1.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1부.
2.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 평가서 1부(소장품 또는 기증품일 경우)
3. 미술장식 설치계약서 사본 1부.
 - 건축주와 작가 또는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(또는 사업자 등록번호),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
4. 작가경력서 사본 1부.
5.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(A3규격 황으로 합철, 10부)
 - ① 건축개요, ② 주위현황도, ③ 건축물투시도, ④ 미술장식 개요, ⑤ 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(작품위치 표기), ⑥ 작품설명서, ⑦ 작품사진(정면, 배면, 우측면, 좌측면), ⑧ 작품도면(규격표시, 정면도, 배면도, 우측면도, 좌측면도) ⑨ 건축물과의 조화(원경, 근경)
6. 조각 등 입체조형물인 경우에는 작품모형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1점, 회화나 서예 등 평면인 경우에는 작품사진(11" × 14") 1매 제출
 -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,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
7. 미술장식 설치 비용 산출내역 1부.